□ 처분요구 사항 일람표

연번	관련기관	지적내용	처 분 요 구				비고
			처분 종류	신분상 조 치	재정상 조치		
					종류	금액(천원)	
1	서울시설공단	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체결 업무 처리 등 부적정	주의요구	2	-	-	
2	서울시설공단	○○○○○ 주차료 체납 관리 업무 미흡	통보				
3	서울시설공단	○○○○○○○○ 대관 이용료 감면 부적정					현지조치
4	서울시설공단	미수채권 통합관리 등 개선 필요					현지조치

감 사 위 원 회

주 의 요 구

제　　목　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체결 업무 처리 등 부적정

관 계 기 관　서울시설공단

내　　용

서울시설공단「회계규정」제150조에 따르면 공단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은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방계약법”이라 함), 동 시행령,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.

「지방계약법시행령」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차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.

가. 폐기물처리 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

서울시설공단 ○○○○○처는 2016. 7. 28. 시설공단 ○○처에 ‘2016년 ○○○ 교면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’ 입찰 의뢰 시, 입찰참가 자격으로 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, 공동수급이 가능하고,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도록 하였다.

그런데 ‘2016년 ○○○ 교면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’ 입찰 공고를 5차례(’16.7.28., 8.4, 8.17, 8.25, 9.8.) 실시하였으나 모두 무응찰로 유찰되었으며,

이후 서울시설공단 ○○○○처는 2016. 9. 23. ○○처에 일반 수의계약을 요청하면서 재공고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시 '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'에도

최초 공고문의 자격조건과 다르게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지 않고 ○○ 등에 소재한 ○○○○(주) 등을 선정하여 계약 요청하여 수의계약을 체결(계약체결일 : '16.9.27., 계약금액 : 62,879천원) 하였다.

【표 1】 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현황

용역명	설계가격 천원	입찰참가자격(주 내용)	입찰 결과	수의계약대상	
				업체명	주사무소
2016년 ○○○ 교면정비공사 폐기물 처리	64,163	- 건설폐기물수집·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동시에 보유 -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소재한 업체	5회유찰	○○○○(주), ○○○○○(주)	○○, ○○

(출처 : 감사대상기관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)

나. ○○○○차고지 폐수처리시설 정비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

서울시설공단 ○○○○○○처는 2016. 8. 2. 시설공단 ○○처에 '○○○○차고지 폐수처리시설 정비공사' 입찰 의뢰 시, 입찰참가 자격으로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한 산업환경설비 공사업(종합공사업)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자로 하였다.

그런데 '○○○○차고지 폐수처리시설 정비공사' 공고를 2차례('16.8.2., 8.9.) 실시하였으나 모두 무응찰로 유찰되었으며,

이후 서울시설공단 ○○○○○○처는 2016. 8. 24. ○○처에 일반 수의계약을 요청하면서 재공고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시 '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'에도

최초 공고문의 자격조건과 다르게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 ○○시에 주사무소가 있고, 산업환경설비 공사업(종합공사업)면허가 아닌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㈜○

○○○을 선정하여 계약 요청하여 수의계약을 체결(계약체결일 :'16.8.29., 계약금액 : 26,800천원) 하였다.[1)]

그 결과 위 가, 나와 관련한 계약에서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6조 수의계약 체결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.

관계기관 의견

서울시설공단은 2회 이상 유찰이 될 경우 당초의 조건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로 시행하거나,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.

조치할 사항

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체결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**(주의)**

※ 신분상 조치

서울시설공단은 '폐기물처리 용역'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감사규정 제15조에 의거 업무담당자 "주의" 조치

【관련자】 서울시설공단

소 속		직 위 (직명)	성 명 (생년월일)	관 리 기 간	비 고
행위시	현 재				
서울시설공단 ○○○○처	서울시설공단 ○○○○처	○○○○	○○○ (○○.○○.○○)	16.9.23~ 16.12.31	주의

【관련자】 서울시설공단

소 속		직 위 (직명)	성 명 (생년월일)	관 리 기 간	비 고
행위시	현 재				
서울시설공단 ○○○○○○처	서울시설공단 ○○처	○○	○○○ (○○.○○.○○)	'15.01.01~ '17.04.01	주의

1) 다만 폐수처리시설 정비공사는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도 수행할 수 있음

감 사 위 원 회

통 보

제 목 ○○○○○ **주차료 체납 관리 업무 미흡**

관 계 기 관 **서울시설공단**

내 용

서울시설공단에서는 ○○(노상·노외)○○○을 관리하면서 주차료에 대해 체납 발생 시 체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「주차장법」 제9조 및 제14조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97조에 따르면 주차요금 및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3장 '체납처분'(제33조 내지 제107조)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압류 대상은 별도로 정하는 압류금지대상[2] 재산 외의 동산·부동산·유가증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고, 「민법」 제7장 '소멸시효' 제162조 내지 제165조에서는 채권의 성격별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168조에는 재판상의 청구, 압류·가압류 또는 가처분, 승인 등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.

따라서 위 공단에서는 ○○○○○ 주차요금 등에 대해 체납이 발생 할 경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등의 체납처분 및 체납 징수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한편 공단의 ○○(노상·노외)○○○ 주차료 체납 발생 현황은 아래 〔표 1〕과 같다.

---

2)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등

【표 1】 주차료 체납 발생 현황

(단위: 원)

발생 연도	체납 총액	체납금 중 압류 금액	체납금 중 미압류 금액	
			미압류 금액	시효 만료 여부
계	79,342,550	36,033,950	43,308,600	-
'11	1,776,600	1,724,600	52,000	소멸시효 만료
'12	7,012,900	2,177,100	4,265,200	소멸시효 만료
			570,600	소멸시효 진행 중
'13	7,969,200	2,687,800	4,088,200	소멸시효 만료
			1,193,200	소멸시효 진행 중
'14	27,481,200	9,985,900	17,495,300	소멸시효 진행 중
'15	18,194,300	8,034,800	10,159,500	소멸시효 진행 중
'16	13,556,300	8,785,800	4,770,500	소멸시효 진행 중
'17	3,352,050	2,637,950	714,100	소멸시효 진행 중
'18	5,662,800	4,948,600	714,200	소멸시효 진행 중

주: 1. 주차요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, 소멸시효 도과 여부는 2018.12.31. 기준으로 산정

2. 위 표는 감사대상 기간('16~'18) 및 소멸시효(5년)을 고려하여, '11년부터 연도별 기재

3. 발생 연도는 출차일 기준

4. '11~'12년도 미압류 금액 중 소멸시효 진행 중인 금액은, 차량 압류가 되었었으나 폐차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등의 사유임.

(출처: 감사대상기관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)

그런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압류금지대상 재산을 제외하고 압류대상자의 급여·부동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 할 수 있음에도,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회 시 차량에 대해서만 재산조회를 실시하고, 명의이전 또는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체납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지 않는 등 체납관리에 철저하지 못하였다.

그 결과 위 〔표 1〕과 같이 2019. 4월 감사일 현재[3] 8,353,400원의 체납금의 소멸시효가 만료 되었으며, 앞으로 최근 7년('12~'18)간 발생한 체납액 35,669,400원도 소멸시효가 만료 될 우려가 있어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.

3) 2018.12.31. 기준

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

서울시설공단에서는 주차료 특성상 고의성이 낮고 소액의 체납자가 상당수이므로 차량 외 재산(부동산, 예금) 압류는 과도한 제재로 이용시민의 불편 및 압류비용의 추가 발생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

그러나, 주차료 발생 당시에는 고의적 미납이 아니었을지라도 위 〔표1〕의 주차료 체납발생 현황에 기록된 체납 건들의 경우, 거주지 불명 등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 등을 통하여 체납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체납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며, 내부검토를 통해 체납금액 대비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하여만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조치할 사항

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○○○○○ 주차요금 등에 대해 체납 발생시 체납자의 차량뿐만 아니라 압류금지대상 재산 외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주차료 체납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 **(통보)**